

희망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본 계약 제5조 (계약해지 요건)에 의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3. 입소비용

분류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35,030
	장기요양2등급	32,430
	장기요양3등급	29,940
	장기요양4등급	28,570
	장기요양5등급	27,21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46,960
	장기요양2등급	43,500
	장기요양3등급	40,150
	장기요양4등급	38,790
	장기요양5등급	37,41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58,410
	장기요양2등급	54,110
	장기요양3등급	49,960
	장기요양4등급	48,590
	장기요양5등급	47,21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64,350
	장기요양2등급	59,610
	장기요양3등급	55,070
	장기요양4등급	53,680
	장기요양5등급	52,32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1등급	69,000
	장기요양2등급	63,930
	장기요양3등급	59,050
	장기요양4등급	57,690
	장기요양5등급	56,310

1.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5등급과 같다.
2. 비급여항목은 식재료비 1식 2,500원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입소비용 납부 의무

3.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기타 등)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희망주야간보호센터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희망주야간보호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4. 수급자의 입소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기타 이 계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